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7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고액채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김영진의원안)	2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27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8.
- (3) 회 부 일 : 2024.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납액은 2조 3,57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8.8% 및 46.1%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고액채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

(김영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7조) ○ 국세의 금액별 소멸시효(제1항) -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 10억원 이상의 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 ○ 국세의 금액별 소멸시효 - 10억원 이상: 15년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국세: 10년 -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 김영진의원안 2024. 8. 28. 발의(의안번호 3278)

☐ 개정안은 10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세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로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더불어 납세자의 납부의무 역시 소멸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¹⁾.

□ 한편, 최근(2023. 12.) 국세청 보도자료²⁾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체납액은 7,117억원 증가³⁾한 규모임.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698명의 체납액은 2조 3,5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2023년 신규 공개 체납액 구간별 현황]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7,966	5,941	1,327	532	94	47	25
비율	100.0	74.5	16.7	6.7	1.2	0.6	0.3
체납액	51,313	18,750	8,988	8,300	3,572	3,105	8,598
비율	100.0	36.4	17.5	16.2	7.0	6.1	16.8

□ 이에 개정안은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국세청,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2023.12.14.)

3) ('22) 6,940명, 44,196억 원 → ('23) 7,966명(1,026명 ↑), 51,313억 원(7,117억 원 ↑)

□ 다만, 소멸시효 기간의 확대는 국가 조세채권의 확보 필요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납세 독촉·압류 등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정지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다른 법률상 채권은 민사채권(10년), 상사채권(5년), 일반 국가채권(5년)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비교]

채권종류	소멸시효	근거
민사채권	- 보통의 채권: 10년 - 단기소멸시효: 3년, 1년 - 채권·소유권 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제162조 ~ 165조
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
국가채권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세징수권	- 5억원 이상: 10년 - 5억원 미만: 5년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환급청구권	5년	「국세기본법」 제54조

문 의 처

02)6788-5161